

## 영주시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180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3.

제 출 자 : 영 주 시 장

### 1. 제안 이유

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영주시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 내용

- 가.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 서비스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함 (안 제3조)
- 나. 효과적인 영주시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4조)
- 다. 영주시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수탁자의 자격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함 (안 제6조)
  - 의료법인 또는 병원 대표자로서 병원·한방병원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
  -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- 라. 수탁자는 정부회계연도 기준에 의거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(안 제12조)

### 3. 자치법규안 : 붙임

### 4. 참고사항 : 붙임

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설립 사업계획서

## 영주시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하는 영주시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(이하 “요양병원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치)** 요양병원은 영주시 관할구역안에 둔다.

**제3조(업무)** 요양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
2.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·단기적인 요양 서비스
3.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
4.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계몽
5.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

**제4조(설치·운영)** ①영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병원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시장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

③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④시장이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일부 시설공사(증축·개축),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⑤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⑥제4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부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, 사업 시행에 있어서 시장의 지도·감독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위탁기간)** 요양병원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할 수 있다.

**제6조(수탁자의 자격)** 요양병원 수탁자의 자격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의료법인 또는 병원 대표자로서 병원·한방병원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
2.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

**제7조(수탁자의 의무)** ①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,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망설·손괴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8조(공유재산 사용 등)** ①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(요양병원의 부지, 건물 및 장비 등)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는 요양병원의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,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, 이전승계 또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9조(관리규정)**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절한 요양치료 등을 위하여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10조(의료수가)** ①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제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②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**제11조(입원 및 퇴원)** ①노인성 질환 및 치매환자의 입원은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를 참고하여 요양병원의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다.

②퇴원은 요양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.

**제12조(회계 및 결산)**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, 요양 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요양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정부회계연도 기준에 의거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공 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감독)**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요양병원 운영이나 업무대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,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 상황, 장부, 기타서류를 조사·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위탁의 해지)**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요양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요양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2. 수탁자가 조례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
3.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②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요양병원의 모든 시설 을 위탁자에게 양도한다. 이 경우 수탁자는 기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.

**제15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영 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.

**제1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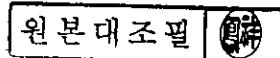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市立老人院兼養病院設立  
事業計劃書

담당	과장	소장	부시장	시장	결
111	이성근	李	안기현	安基鉉	李成根

기획감사담당관, 111

榮 州 市



# 市立 老人癡呆療養病院建立 事業計劃書

## I. 事業者

- 영주시장

## II. 事業의 目的

-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비하여 노인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통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III. 現 沈

- 영주지역의 노인인구가 경북 평균 11.2%(3,120,399명)보다 2.5%가 많은 전체 인구의 13.7%인 16,938명(2003. 12월 현재)으로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공공 보건의료 시설이 전무한 실정

\* 의료취약 인구수(영주) : 17,559명(특거노인3,351, 장애자3,523, 노인부부3,889, 기초생활보호대상자6,736, 소년소녀가장60)

- 도·농 통합도시로 민간병원의 낮은 의료수준과 부족으로 진료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대부분의 노인환자 및 응급 환자들이 인근지역으로 후송되고 있는 실정으로 생명 안전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

\* 영주시 병원 현황

- 개소 수 : 3개소(병원2, 한방병원1)
- 병상 수 : 270병상(성누가130, 기독70, 장수한방70)

### III. 設立 必要性

#### ○ 지역노인 건강증진에 기여

영주지역은 농촌 도시지역으로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3.7%나 차지하고 있어 노인보건복지정책과 부합되는 노인치매, 요양전문병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과 만성퇴행성질환의 체계적인 치료와 예방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여 노인들의 삶의 의욕 고취 및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도와 지역노인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

#### ○ 취약한 공공보건 의료역할 수행

노인건강관리 및 사회복지를 위한 의료서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만성질환자 관리,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소의 취약한 공공보건 의료역할을 수행 할 수 있으며

#### ○ 의료서비스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

영주지역 병·의원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직·간접적으로 보강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의료비용 경감과 의료비의 타지역 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노인전문요양, 치매병원 설립이 필요 함.

## IV. 事業概要

### ○ 사업비

#### • 건축비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건축비				비고
	계	국비	도비	시비	
시립 노인치매 요양병원설립	3,152,125	1,576,062 (50%)	788,031 (25%)	788,031 (25%)	

### ○ 위치 : 미정

### ○ 사업기간 : 2004년 ~ 2006년(3개년)

### ○ 사업규모 : 90병상의 노인치매요양병원 설립

#### • 부지, 건평 : 미정

### ○ 운영 : 위탁관리 · 운영

#### • 위탁방법

- 각 개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 사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 
의료법인으로부터 시설부지 기부체납 받아 신축
- 향후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탁  
운영 방안 강구

#### • 운영방법 : 위탁관리 · 운영(추후 선정)

※ 관련자치법규 제정 후 위탁계약 체결

## V. 豈算確保 計劃

### ○ 2004년도 2회 추경예산 시 확보 : 788,031천원(시비)

※ 지방비 중 도비 지원 불가능 시 보조사업 신청을 포기.

## VII. 事業效果

- 노인성 질환 예방 및 전문적인 치료를 통하여 노인들의 삶의 의욕과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기여
- 지역 병·의원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직·간접적으로 보강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
-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령인구에 대한 치료율이 증대 및 의료비의 타지역 유출방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
-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한 노인보건복지 정책에 기여